

# 수의학과 대학원 내규

제정 2007. 5. 16 (2007. 5. 16 교수회의 통과)

1차 개정 2008.4.2. (2008.4.2. 교수회의에서 제4조제3호, 제9조, 별표 1을 변경하여 통과)

2차 개정 2009.10.28. (2009.10.28. 교수회의에서 제7조를 변경하여 통과)

3차 개정 2010.11.10. (2010.11.10. 교수회의에서 제11조제2항을 변경하여 통과)

4차 개정 2012.5.23. (2012.5.23. 교수회의에서 제9조제2항제2호를 변경하여 통과)

5차 개정 2015.5.20. (2015.5.20. 교수회의에서 제9조제2항제2호를 변경하여 통과)

6차 개정 2015.6.3. (2015.6.3. 교수회의에서 제2조, 제4조, 제7조를 변경하고, 제9조제3항을 추가하여 통과)

7차 개정 2016.6.1. (2016.6.1. 교수회의에서 제5조를 변경하여 통과)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교 일반대학원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수의과대학 대학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생명과학분야에서 21세기를 선도할 미래지향적이며 중추적인 연구 인력을 배출한다.
2. 수의 진료현장에 필요한 지식의 심화학습과 연구, 임상경험을 통하여 전문임상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한다.

제2조 (전공) ①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사 통합과정 하에 다음 12개의 전공분야를 둔다. (개정 2015.6.3.)

- ② 수의해부학 및 세포생물학전공 / 수의생리학전공 / 수의약리·독성학전공 / 수의생명과학전공 / 수의병리학전공 / 수의미생물학 및 전염병학전공 / 수의공중보건학전공 / 실험동물의학전공 / 수의내과학전공 / 수의외과학전공 / 수의산과학 및 발생공학전공 / 수의영상의학전공(개정 2015.6.3.)

제3조 (교육과정) ① 수의기초분야는 해부학, 조직학, 생화학, 미생물학, 생리학, 면역학, 약리학, 독성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의기초과학 분야에 대해 폭넓은 관심과 심도 있는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탐구능력을 배양하여 생명과학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자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한다

- ② 수의준임상분야는 병리학, 전염병학, 조류질병학, 어패류질병학, 실험동물의

학, 공중보건학, 기생충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 경험과 이론에 대한 지식을 조화롭게 겸비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지식에 대한 전수는 물론 최신의 연구동향을 전달하여 현장감있는 교육을 실시한다.

- ③ 수의임상분야는 내과학, 외과학, 산과학, 임상병리학, 방사선 및 영상진단학, 안과, 치과, 피부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임상분양의 이론과 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학습계획 하에 진행함으로써 우수한 임상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④ 한편 이상의 각 학문 분야간의 경계는 없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학문분야에 대한 시야를 넓혀 창의성이 풍부한 연구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제2장 입학

제4조 (지원자격)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개정 2015.6.3.)

제5조 (입학정원) 수의기초분야, 수의준임상분야, 수의임상분야 등 각 분야에 편중되는 것을 막고 연구지도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석박사 불문 입학정원 대학원생은 교수 1인당 연간 3명 이하로 한다.(개정 2016.6.1)

제6조 (전형방법) 매 학기별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수행되어온 입학전형 방법을 개선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심사는 물론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별표 1.에 제시한 기준에 의해 입학전형을 수행한다.

## 제3장 수료 및 종합시험

제7조 (수료학점)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칙에 따른다.(개정 2015.6.3.)

제8조 (종합시험) ① 석사과정은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본지식과 능력을 시험하며 학위과정 중 본인이 수강한 과목 중 3 과목을 시험한다.

- ② 박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전공영역 전체의 전문적 지식과 연구방법에 관한 능력을 출제하며 본인이 수강한 과목 중 4 과목을 시험한다.

## 제4장 학위논문

### 제9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① 석사학위 청구논문: 학위과정의 소요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대학원이 정하는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합격 및 학위 논문 발표를 마친 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4.2.)
-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3호를 모두 만족해야 한다.(개정 2008.4.2.)
  1. 학위과정의 소요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대학원이 정하는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 및 학위 논문 발표를 마친 자(개정 2008.4.2.)
  2. 입학 후 주저자로서 SCI(E) 논문 1편 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지 3편 이상을 게재하였거나 게재 승낙을 취득한 자. I.F. 10 미만 논문의 공동주저자는 2명까지만 인정하고, I.F. 10 이상 논문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5.23.) 공동주저자 논문은 공동주저자 수에 따라 1/N편으로 인정한다.(개정 2015.5.20.)
  3.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학위과정의 소요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7학기 이상 전일제로 등록한 자. 단, 선행 학점 취득한 자에 한하여 6학기 이상 전일제로 학업을 수행한 자(개정 2008.4.2.)
- ③ 청구논문 발표회: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을 갖춘 자는 매 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개최되는 수의과대학 석·박사 청구논문발표회에서 공개발표를 해야 한다.(개정 2015.6.3.)
  1. 발표자의 지도교수 참석은 의무사항이며 불가피할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논문심사 위원 중 1인을 선임하여 대리 참석시켜야 한다.
  2. 발표회 이외의 시간에 발표를 해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논문발표 일정을 정하여 전임교원 5인 이상이 참석한 발표회에서 발표해야 한다.

### 제10조 (심사용논문제출)

1. 석사학위 논문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이 정한 기일 내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이 정한 청구논문 신청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전까지는 제 9 조 2-②항과 관련된 서류를 수의학과 대학원 상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정을 받아야만 한다. (예: 접수 마

감일이 9월 17일인 경우 9월 12일까지).

## 제5장 학 위 수 여

제11조 (학위수여) ① 각 과정의 소요학점을 취득하고 각종 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친 자에게 수의학 석사 또는 수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입학 후 수료 시까지 전일제로 수학하지 않을 경우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10.11.10.)

## 제6장 수의학과 대학원위원회

제12조 (대학원위원회) ① 수의학과 대학원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사업무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수의학과 대학원 상설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원위원회는 수의기초분야, 수의준임상분야, 수의임상분야 등, 각 분야에 서 선출한 2인과 대학원 주임교수 1인등 총 7명으로 구성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상설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대학 원 주임교수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역할) 대학원위원회는 입학전형, 내규의 조정, 졸업요건의 심사 및 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내규 제9조 2-②항은 2007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2006년 9월 이후에 입학한 자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2편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별칙규정) 이 내규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하여 입학한 전일제 학생이 취업 혹은 퇴학 등의 이유로 전일제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지도교수의 차기 신입 대학원생의 배정을 제한한다. 단,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동의를 거쳐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2008.4.2.)**

이 개정 내규(제4조제3호, 제9조제1항, 제2항, 별표1)는 2008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28.)**

이 개정 내규(제7조)는 2009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1.10.)**

이 개정 내규(제11조제2항)는 2010년 11월 10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부터 실시하며, 대학원생의 지도교수는 지도학생의 전일제 학업여부를 매학기 개시 1개월 이내에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2012.5.23.)**

이 개정 내규(제9조제2항제2호)는 2012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5.20.)**

이 개정 내규(제9조제2항제2호)는 2015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6.3.)**

1. 이 개정 내규(제2조)는 2015년 2학기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제4조)는 2011년 1학기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3. 이 개정 내규(제7조)는 2015년 6월 3일 현재 재학 중인 학생부터 적용한다.
4. 이 개정 내규(제9조3항)는 2015년 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내규(제 5조)는 2017년 1학기 신입생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수의학과 대학원 입학전형 세부 배점기준 표

A. 서류심사 세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학부 성적               | 50 점  |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 적용함  |
| 영어 성적 <sup>*1</sup> | 50 점  | <u>전형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공인영어시험 (TOEIC, TOEFL, TEPS) 성적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적용한다.</u> |
| 총 점                 | 100 점 |  |

<sup>\*1</sup>단, 공인 영어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수험생은 면접일 당일 실시하는 영어시험 점수를 적용한다.

B. 심층면접 세부기준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
|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  | 40 점  | *우수논문 발표 실적<br>*동일계 지원자 우대                                 |
| 학문에 대한 열정 및 진지성 | 20 점  |  |
| 연구 능력           | 20 점  | *동일계열 연구실 근무 경력자 우대  |
|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     | 20 점  | * 전일제 지원자: 5점<br>* 석·박사 통합과정 진학자: 5점<br>* 심사위원이 정한 사항: 10점 |
| 총 점             | 100 점 |  |